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은 급변하는 21세기 목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회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지향하고, 목회의 각 부분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새 시대의 교회 환경에서 목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 소명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설명회)

수련과정 설명회는 등록을 마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며 과송예배 등을 실시한다. 그 시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기 : 매년 6월중
2. 기간 :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 (교과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실습 교과목: 예배, 예식, 설교, 심방, 상담, 교육, 행정, 영성과 리더십 등의 교역실무를 실습,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2. 집중교육 교과목: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운 교역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인 정립과 교단 및 목사의 정체성과 기타 전문목회 분야들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회실습)

목회실습은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에서 수련하는 동안 소속 교회의 협조와 지도목사의 지도 하에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훈련하고 실습하며 평가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하는 동안 소속한 노회의 지도를 받고, 소속 교회에서 수련과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교회가 아

닌 곳에서 목회실습을 원하는 수련생은 소속 노회의 허락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수련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수련방법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① 총회 산하기관과 유관 에큐메니컬 협력 및 선교기관
 - ② 개척 및 단독 목회
 - ③ 해외
2. 지도목사와 목사수련생의 관계가 부부나 부모 자녀의 경우, 목회실습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외 유학을 앞둔 자나, 특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포함하여 수련과정 동안 교단이 인정하는 전임 전도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예우를 받으며, 소속 노회는 수련생이 수련하고 있는 소속 교회와 협의하여 소속교회가 수련 기간에 필요한 사례비와 경비를 책임지도록 한다.
 4. 소속 교회는 수련생에게 설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련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규적인 설교 기회를 주어 이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제5조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

1.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은 지도목사가 본 시행세칙 제3조 1항의 범위 안에서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정한다.
2. 목회실습이 매 분기별로 운영되는 만큼 총 4분기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6조 (목회실습 기간)

목회실습 기간은 총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1. 1년차 과정 : 1분기(6월-11월), 2분기(12월-5월)
2. 2년차 과정 : 3분기(6월-11월), 4분기(12월-5월)
3. 목사수련생이 목회실습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교회를 사임하고 실습지를 이명할 경우, 목회 실습지 이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4. 목사후보생이 목회실습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교회를 사임할 경우, 목회실습과정이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큼 순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집중교육)

집중교육은 수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그 일정은 매년 8월 말 혹은 9월 초로 한다.

제8조 (집중교육 교과목 편성)

집중교육을 위한 교과목 편성은 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본 시행세칙 제 3조 2항에 따라 정하되, 1년차와 2년차의 해당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각 교과목을 편성한다.

1. 1년차 범위:

성서와 설교구상1, 설교기법1, 교회헌법1, 교단역사와 선교정책1, 목사의 품성과 리더십1, 전도방법론1, 교회개척과 모델 연구, 성경공부 지도론, 국제선교, 관혼상제와 목회, 상담의 실제, 영성과 기도훈련, 예배와 찬양(찬송가학/실연), 기독교와 사회변화, 한국의 종교문화(타 종교), 이단 문제, 성서지리, 개혁교회와 장로교 등

2. 2년차 범위:

성서와 설교구상2, 설교기법2, 교회헌법2, 교단역사와 선교정책2, 목사의 품성과 리더십2, 전도방법론2, 교회행정(공동의회/당회/제직회/회의법)과 재정(재정운용/예결산), 소그룹목회(구역운영/제자훈련 등), 교회력과 예전, 교회학교의 운영방안, 지역 교회의 에큐메니컬선교, 선교와 사회복지, 목회심리 치료, 심방의 실제, 정보화 목회, 기독교 문화선교와 목회, 교화와 예술(미학/건축/음향 등), 부교역자론 등

제9조 (목회실습일지, 보고서 작성)

목회실습과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수련생은 다음과 같이 목회실습에 대한 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수련생은 매주 목회실습 내용과 느낀 바를 ‘주간목회실습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도 목사에게 제출한다.
2. 수련생은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매 분기별(6개월)로 ‘분기목회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목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수련생은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성경을 통독한다.

제10조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1년차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중간평가 모임을 통하여 목회실습과정 동안 얻었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 운영위원과의 면담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목회현장의 요구와 이의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3. 중간평가의 시기는 1년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실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이 제출한 실습일지와 보고서, 지도 목사가 제출한 평가서를 기초해서 수련생의 1년 과정을 평가하여 수료와 유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종합평가 및 수료)

종합평가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총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종합평가 모임에서는 수련생이 2년 동안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회방향 결정과 목회지도력 형성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발표하도록 하고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총 2년간의 모든 수련과정을 종합평가하고 수료식을 한 후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3. 수료증은 ‘총회장’ 명의로 발행한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5. 종합평가의 시기는 2년차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실시한다.

제12조 (개정 및 시행)

1.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와 총회 고시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3. (시행)

이 시행세칙은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제정
- 2007년 10월 29일 실행위원회 개정
- 2008년 8월 11일 실행위원회 개정
- 2008년 11월 10일 실행위원회 개정
-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